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제 출 자

여상훈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I. 경과

[회의 일시·장소]

소위원회 제23차 회의

일시 : 2012. 12. 10. (월) 12:00~14:40

장소 : 가연

[참석위원]

여상훈(위원장), 이건리, 이상원, 이태섭, 임성근(위원은 가나다순으로 표시)

[진행방식]

- 심의대상을 양형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회부한 ①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의 건, ②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의 건, ③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의 건으로 정함
-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초안의 내용 중 전문위원단의 논의 결과 미합의 쟁점으로 남은 사항에 관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단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소위원회에서 각 쟁점별로 심의·진행

[심의대상]

구분	주무전문위원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Ⅳ)(2012. 11. 12.)	최형표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Ⅴ)(2012. 11. 26.)	최형표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Ⅵ)(2012. 12. 3.)	최형표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2012. 12. 3.)	이중교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최형표
●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2012. 11. 26.)	함석천
●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2012. 12. 3.)	함석천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함석천
●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Ⅰ)(2012. 11. 12.)	최형표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2012. 11. 12.)	주용완, 조석영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Ⅱ)(2012. 11. 12.)	주용완, 조석영
●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Ⅱ)(2012. 11. 26.)	최형표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Ⅲ)(2012. 11. 26.)	주용완, 조석영
●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Ⅲ)(2012. 12. 3.)	최형표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Ⅳ)(2012. 12. 3.)	주용완, 조석영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최형표

○ 대상범죄별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II.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전문위원 회의에서 미합의 쟁점 없이 의견 일치되어 소위원회에서 별도 논의 거치지 않음

2. 양형인자

가.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의 취급

[제1안]

다수의견(이건리, 이상원, 임성근)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명시적 가중처벌 규정 없어도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특정 직종 종사자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커서 높은 처벌 필요함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에서 공무원의 범행 등과 같이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죄의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의 행위를 동일하게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해야 함
- 특정 직종 종사자의 행위를 가중처벌함에 있어 범죄의 종류나 직종에 따라 특별가중과 일반가중으로 취급이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

[제2안]

소수의견(여상훈, 이태섭)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는 ‘일반 조세포탈’ 및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규정 없음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행위를 이중으로 가중하여 지나치게 높은 형이 선고될 우려 있음

나. ‘일반 조세포탈’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인 “상습범인 경우”를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제1안]

다수의견(여상훈, 이상원, 이태섭, 임성근)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

- ‘조세포탈’의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에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 없음
- 상습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범행 횟수가 많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는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보임

[제2안]

소수의견(이건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

- 상습적 행위와 일회적 행위는 처벌에 있어 차등을 두어야 함
- 성범죄, 사기범죄, 마약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는 것과 취급을 같이 해야 함

다. ‘일반(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하기로 의견 일치

Ⅲ.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형량범위를 권고하기로 의견 일치

■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년 - 7년
4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일반공갈의 4 유형 또는 5유형에 해당할 경우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와 일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형량범위에 의한다.

2. 양형인자

가.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를 특별(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 또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 중 하나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IV.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가.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의 소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뉜

[제1안]

다수의견(여상훈, 이상원, 이태섭)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를 아래 ‘형량범위표 1’과 같이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양분하자는 견해

-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는 있으나, 극단적 인명경시의 경우를 별도의 유형으로 세분하는 것은 고의 및 과실에 기한 범죄를 단일한 법조문에 의하여 단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반함
- 고의범을 ‘단순 고의범’과 ‘극단적 인명경시의 경우’만으로 분류하면 양자 사이에 권고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고, 범행 동기 중 어떤 동기는 유형분류 기준으로, 어떤 동기는 양형인자로 반영되는 등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양형기준이 될 우려가 높음
- 극단적 인명경시의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유형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특별가중인자(예컨대,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가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기할 수도 있음

[제2안]

소수의견(이건리, 임성근)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를 아래 ‘형량범위표 2’와 같이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및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극단적 인명경시의 경우’로 세분하자는 견해

- 다수의견에 의하면 극단적 인명경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행위를 일반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할 우려가 있음

※ 형량범위표 1(다수의견)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10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 형량범위표 2(소수의견)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10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4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극단적 인명경시의 경우)	18년-23년	22년-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2. 양형인자

: 전문위원 회의에서 미합의 쟁점 없이 의견 일치되어 소위원회
에서 별도 논의 거치지 아니함